[참고자료: 한국인터넷 진흥원 '창업 초기 기업을 위한 정보보호 가이드라인'] 2.3.2 스마트폰 앱 서비스 제공

(1)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

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이란 스마트폰 앱 서비스 제공자가 앱을 통해 이용자의 스마트폰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설치된 기능에 접근하거나 해당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.

스마트폰 앱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앱 설치 시 접근권한이 필요한 경우 필수적·선택적 접근권한을 분류 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앱 접근권한 획득 시 안내사항은 ①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, ②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, ③ 접근권한 허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(해당 접근권한이 서비스

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생략가능)이다.

또한 이용자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접근권한을 설정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.

접근권한 고지내용으로 볼 수있는 사례 접근권한 고지내용으로 볼 수없는 사례 사진과 동영상 찍기 사진과 동영상 찍기 개발자 개발자 연락처 연락처 웹페이지 방문 ⑤ 웹페이지 방문 ◎ 이메일 보내기 ◎ 이메일 보내기 0 0 위치 위치 개인정보처리방침 ☆ 개인정보처리방침 대략적인 위치(네트워크 기반) 정확한 위치(GPS 및 네트워크 기반) 권한 정보 🌒 권한 정보 타이크 ♣ 마이크 오디오 녹음 오디오 녹음

그림 9 앱 실행 시 접근권한 고지 및 동의 예시

2.4.2 광고성 정보 전송

(1)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유의사항

구분	유의사항	주요내용
1	사전 수신동의 (Opt-in)	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수신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함
		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· 이용하는 것과 별개로 전송자가 보내는 광고성 정보를 수신하겠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분해서 받아야 함
2	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	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수신동의를 철회한 경우 광고성 정보의 전송 금지
3	야간광고 전송제한	오후 9시~다음날 오전 8시(야간시간)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동의 필요

표 12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유의사항

[☞] 불법스팸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('17,11) https://spam.kisa.or.kr/customer/sub2_R.do?boardNo=1004

[기타 E-mail]

(2) 전자우편을 통한 광고성 정보 전송 시 표기의무 사항

누구든지 전자우편을 통해 광고성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,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"(광고)"를 표시하여야 한다.

본문에는 전송자의 명칭·전자우편주소·전화번호 및 주소를 표시하여야 하며, 발신 전자우편주소가 회신이 되어 수신이 가능한 경우에는 본문에 전자우편주소를 생략할 수 있다.

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는 수신자가 본문 내에 "[수신거부]" 등을 눌러 곧바로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간단히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로그인을 요구하는 등 다른 정보를 요구하여 절차를 번거롭게 해서는 안 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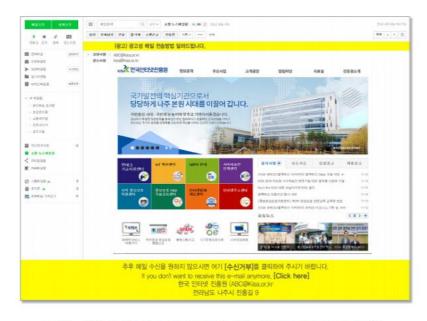


그림 11 전자우편을 통한 광고성 정보 전송 시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

[참고자료: 방송통신위원회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2017.3]

3 정보와 기능의 범위

- o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OS(구글)와 iOS(애플) 등이 동의 기능을 구현하고 있는 접근권한의 범주를 포괄하여 다음과 같이 이용자 통제가 필요한 범위로 설정
- (이용자 저장 정보*) 스마트폰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직접 저장한 정보는 그 자체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, 설사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동의 대상에 포함
- * 연락처, 일정, 영상, 통신내용, 바이오정보 등
- (자동 저장 정보*) 스마트폰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의 입력행위 없이도 자동으로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는 축적되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동의 대상에 포함
- * 위치정보, 통신기록, 인증정보, 신체활동기록 등
- (단말장치 식별 고유정보*)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스마트폰을 식별할 경우 스마트폰 이용자도 식별될 가능성이 높고, 이용자의 동의없이 1:1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이므로 동의 대상에 포함
- *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번호(IMEI) 및 MAC 주소 등
- (입력·출력 기능) 스마트폰의 기능에 접근·동작하여 이용자가 인식 하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의 대상에 포함
- * 영상촬영 기능, 음성인식 기능, 바이오정보 및 건강정보 감지센서 기능 등

Ⅲ. 사업자 유형별 준수 사항

1 앱 서비스 제공자

- ◇ 앱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스마트폰 내의 정보 및 기능에 대한 접근권한이 필요한 경우,
 - ① 필수적 접근권한과 선택적 접근권한을 구분하여, ② 접근권한이 필요한 항목 및 그 이유 등을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고, ③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
- ◇ 앱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선택적 접근권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됨

① 필수적·선택적 접근권한별 고지 내용

- o 앱 서비스 제공자는 필수적 접근권한과 선택적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다음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함
- (필수적 접근권한인 경우) ①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, ②해당 정보 및 기능에 접근이 필요한 이유를 알려야 함
- (선택적 접근권한인 경우) 상기 ①, ②와 함께 ③접근권한 허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함
- o 해당 접근권한이 필수적인지, 선택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함
- ① 이용약관, 개인정보처리방침 또는 별도 안내 등을 통해 공개된 해당 서비스의 범위와 실제 제공 여부

- 앱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의 범위를 정하여 이용자에게 공개한 이용약관, 개인정보처리방침, 접근권한 고지 시 별도 안내한 내용 등을 기초로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의 범위를 판단하되,
- 실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의 범위에서 제외
- ②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합리적 예상 가능성
- 통상적인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설령 앱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의 범위를 정하여 공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서비스의 범위에서 제외
- ③ 해당 서비스와 접근권한의 기술적 관련성
 -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 으로서 해당 서비스와의 기술적 관련성이 존재해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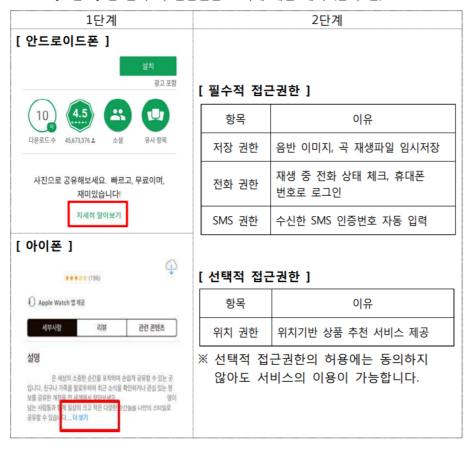
② 고지 방법 및 절차

o 앱 서비스 제공자는 앱을 설치 또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앱 안내정보 화면, 별도 화면 등에 표시하여 접근권한에 대한 고지 내용을 알려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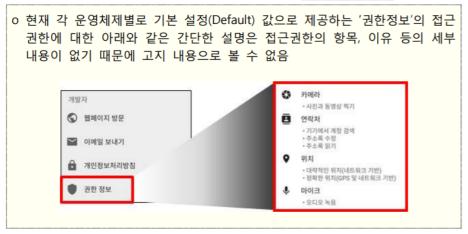
가. 이용자가 앱 마켓을 통해 설치하는 앱의 경우

- o (앱 설치 시) 이용자가 앱 마켓에서 앱을 다운받아 설치할 때 '자세히 알아보기 (구글 플레이)', '설명→더보기 (애플 앱스토어)' 또는 '설명 또는 별도 접근권한 안내창*(원스토어)'란 등에 상기 고지 내용을 알림
 - * 별도 접근권한 안내창은 안드로이드 6.0 미만 버전의 경우에 해당함
 - ♡ 안드로이드 6.0 미만 버전의 스마트폰의 경우, 앱 실행 시 접근권한에 대해 개별적인 동의를 할 수 있는 운영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앱을 설치할 때 필수적접근권한만 설정하여 고지해야 함

[그림 1] 앱 설치 시 접근권한 고지에 대한 예시 (음악 앱)



[그림 2] 본 안내서의 접근권한 고지 내용으로 볼 수 없는 사례



o (앱 실행 시) 이용자가 앱을 실행하여 접근권한이 설정된 정보와 기능에 최초로 접근할 때, 팝업 창 등을 통해 상기 고지 내용을 먼저 알려서 확인하게 한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함

[그림 3] 앱 실행 시 접근권한 고지에 대한 예시 (음악 앱)

1단계 (고지)	2단계 (동의)			
[필수적 접근권한] 저장 권한 : 음반 이미지, 꼭 재생파일 임시저장을 위해 접근이 필요합니다. OOO 사용을 위해 다음 권한을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	OOO의 다음 작업을 허용하시겠습니까? 저장 권한 사용			
다음	거부 허용			

- ☞ iOS 10.0 버전에서는 단일의 팝업 창에서 고지 내용을 알리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이 신설되었는데, 필수적 접근권한과 선택적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해당 접근권한이 필요한 항목 및 그 이유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할 경우 이 역시 본 안내서에 따른 고지 방법으로 볼 수 있음
- ☞ 앱 서비스 제공자는 앱 설치 시 또는 앱 실행 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고지하면 정보통신망법령에 따른 의무는 이행하게 되나, 이 두 가지 방법은 서로 보완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
 - ※ 앱 실행 시에만 고지하는 경우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한 번 고지 후 소멸되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고, 앱 설치 시에만 앱 마켓에서 고지하는 경우 이용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팝업 창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독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임

③ 동의 방법 및 절차

o 앱 서비스 제공자는 운영체제별로 제공하는 앱 개발환경에 맞게 이용자가 접근권한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구현하여야 함

< 주의 >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구분

o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는 해당 정보에 대한 수집 동의는 아니므로, 만약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받는 개인정보이고 이를 앱 서비스 제공자가 수집 하는 경우에는 앱 또는 홈페이지 등에서 회원가입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함

가. 개별 동의선택이 가능한 방식의 운영체제*

- * 구글의 안드로이드 6.0 이상 버전, 애플의 iOS
- o 앱의 실행 시점이 아니라 앱에서 접근권한이 설정된 정보와 기능에 최초로 접근할 때 이용자가 접근권한 동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하도록 구현

[그림 4] 개별 동의선택이 가능한 방식의 운영체제에서 동의 화면



☞ 앱 서비스 제공자가 앱을 안드로이드 6.0 이상 버전에 맞추어 접근권한을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선택 가능하게 하였으나 이용자가 안드로이드 6.0 미만 버전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선택적 접근권한에 대해 앱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없게 됨

따라서, 앱 서비스 제공자는 ①'자세히 알아보기(구글 플레이)'란에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고 ②이용자에게 '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6.0 버전부터 동의 방식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해당 스마트폰 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을 이용하여, 본인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를 안드로이드 6.0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업그레이드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 운영체제가 업그레이드되더라도 기존 앱에서 동의한 접근권한이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접근권한을 다시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미 설치한 앱을 삭제 후 재설치해야합니다.'라고 알려야 함

나. 개별 동의선택이 불가능한 방식의 운영체제*

- * 구글의 안드로이드 6.0 미만 버전
- o 해당 운영체제에서는 선택적 접근권한에 대한 개별적 동의가 불가능 하므로 앱의 접근권한을 설정할 때 필수적 접근권한만 설정하고, 앱을 설치할 때 해당 권한에 대하여 이용자가 동의하도록 구현

[그림 5] 개별 동의가 불가능한 운영체제에서 동의 화면



- 이용자의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운영체제에서 선택적 접근권한의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 앱 서비스 제공자는 앱에서 선택적 접근권한이 설정된 정보와 기능에 최초 접근할 때 이용자에게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구현해야 하며, 사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
- 이용자가 안드로이드 6.0 이상 버전의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으나 앱이 안드로이드 6.0 미만 버전에 맞추어 개발된 경우 이용자는 접근권한을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게 됨

따라서, 앱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여, '자세히 알아보기(구글 플레이)'란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

V. 관련 규정

1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제22조의2(접근권한에 대한 동의)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(이하 "접근권한"이라 한다)이 필요한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동의를 받아야 한다.

- 1.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인 경우
 - 가.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
- 나.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
- 2.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
- 가.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
- 나.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
- 다. 접근권한 허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
-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접근권한을 설정하는 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(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한다)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접근하려는 경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접근권한의 범위 및 동의의 방법, 제3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4조(자료의 제출 등)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고,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표의 방법·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4조의3(과징금의 부과 등)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.

1. 제22조제1항(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

제71조(벌칙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22조제1항(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

제76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1. 제22조의2제2항 또는 제23조제3항(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
- 1의2. 제22조의2제3항(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접근 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
- 12. 이 법을 위반하여 제64조제4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2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9조의2(접근권한의 범위 등)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와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(이하 이 조에서 "접근권한"이라 한다)이 필요한 경우로 한다. 다만,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제조·공급 과정에서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통신, 촬영, 영상·음악의 재생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정보와 기능은 제외한다.

- 1. 연락처, 일정, 영상, 통신내용, 바이오정보(지문, 홍채, 음성,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등 이용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한 정보
- 2. 위치정보, 통신기록, 인증정보, 신체활동기록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이용과정에서 자동으로 저장된 정보

- 3. 「전기통신사업법」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 등 이동통신단말 장치의 식별을 위하여 부여된 고유정보
- 4. 촬영, 음성인식, 바이오정보 및 건강정보 감지센서 등 입력 및 출력 기능
-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설치 또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안내정보 화면 또는 별도 화면 등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,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1.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(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하며, 이하 "운영체제"라 한다)가 이용자가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운영체제인 경우: 법 제22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알린 후 접근권한이 설정된 정보와 기능에 최초로 접근할 때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
- 2.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운영체제가 이용자가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운영체제인 경우: 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접근권한만을 설정하여 알린 후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
- 3. 제1호 또는 제2호의 운영체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: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이용자에게 동의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
- ③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접근권한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용 약관, 개인정보처리방침 또는 별도 안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통신서비스의 범위 와 실제 제공 여부,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합리적 예상 가능성 및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와 접근권한의 기술적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④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,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는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1.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: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기능과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고, 운영체제에서 설정하고 있는 접근권한 운영 기준을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마련하여 공개할 것
- 2.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: 제1호에 따른 동의 및 철회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운영체제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할 것
- 3.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: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한 운영체제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맞는 동의 및 철회방법을 소프트웨어에 구현할 것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접근권한에 대한 동의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 영 시행 이후 공급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(이 영 시행 전에 제작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및 이 영 시행 전에 공급하고 이 영 시행 이후 갱신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)를 통하여 해당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접근권한이 필요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의2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운영체제 또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(이 영 시행 전에 운영체제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공급하는 경우 및 이 영 시행 전에 운영체제 또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이 영 시행 이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및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는 경우(이 영 시행당시 제조 중인 경우로서 이 영 시행전에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운영체제를 설치한경우는 제외한다)부터 적용한다.

< [별표9] 과태료의 부과기준 >

위반행위		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(만원)		
		1호	2호	3회 이상
가. 법 제22조의2제2항 또는 제23조제3항(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	법 제76조 제1항제1호	1,000	2,000	3,000
나. 법 제22조의2제3항(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	제1항제1호		2,000	3,000
푸. 이 법을 위반하여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			
1) 법 제71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	3,000	3,000	3,000
4) 법 제76조제1항제1호, 제2호, 제2호의2, 제2호의3, 제3호부터 제5호까지, 제5호의2 및 제6호의2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1	1,000	1,000	1,000
8) 그 밖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	300	300	300

결론

<서비스 팀>

- 필수적 접근권한/ 선택적 접근권한 항목 정리
- 접근권한 이유 정리
-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정리
- 앱 설치 시 앱스토어 화면에 고지
- 앱 실행 시 초기화면에 고지
- → 결국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는 화면을 만들어야 함

<개발 팀>

■ 해당 항목, 기본적 코드 안드로이드/IOS 에 모두 구현

<디자인 팀>

■ 고지 화면 구현